

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조례 위임 사항을 「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」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,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“신설”하고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(안 제9조의4)
-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및 수도권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“신설”하고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(안 제9조의5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,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에 따른 조례정비 및 시세 감면사항 확대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9조의4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

- 개정안 제9조의4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5조의2에서의 전부위임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(재산세)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.

<관련법령>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
제7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1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2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
3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기업(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)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
4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<신설>	<u>제9조의5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 법 제8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항 각 2호의 단서에 따라 “조례로 정하는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

- 개정안 제9조의5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 상위법의 추가위임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(재산세)의 감면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정함.
- 상위법 위임에 따른 감면조항 신설을 위한 이 개정조례안은 추후 특구지정 또는 개발구역에 창업기업을 유치하였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집행 기관에서는 기업도시 구미의 이름에 걸맞은 기업유치를 위한 구미시만의 특색있는 추가 감면 혜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임.

<관련법령>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
제80조의2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

1. (생략)

가. ~ 나. (생략)
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(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)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,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(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)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(생략)

가. ~ 라. (생략)

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,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1. (생략)

가. ~ 다. (생략)

2. (생략)